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42
----------	------

2013년 7월 3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5월 28일, 주찬식 의원(찬성자 12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찬식 의원)

○ 제안이유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설치한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이, 심의 의뢰자가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을 미리 정해 놓고 위원회는 단지 정해진 신기술의 적정성만을 판단하는 정도의 수동적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원회가 직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해소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을 포함함.(안 제5조제3호 신설)

나.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제안배경

- 본 안건은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능이, 발주부서가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을 미리 정해 놓고 위원회는 단지 정해진 신기술의 적정성만을 판단하는 정도의 수동적 기능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가 신기술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가 직접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기술 활용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라 여겨짐.

[표 1] 신기술 선정방법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발주기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선정기관
현행	설계시 신기술 선정	선정된 신기술 공법 적정 여부 및 설계도서 적정 등	발주부서
개정안	방법 2-1 (현행)	설계시 신기술 선정	선정된 신기술 공법 적정 여부 및 설계도서 적정 등
	방법 2-2 (추가 신설)	적용가능 신기술 후보군 3건 이상 선정하여 제출	신기술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주) 개정안은 상기 “방법 2-1”과 “방법 2-2” 중 발주부서가 자유롭게 선택가능

■ 건설신기술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건설신기술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과 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건설신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보급하여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신기술의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현재, 서울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신기술 적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서 정한 설계반영 의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래 [표 2]에서 서울시의 연도별 신기술 적용 건수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건설신기술 반영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2] 서울시의 연도별 건설신기술 활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활용 실적	67	27,530	105	35,140	229	55,021	218	71,924	147	23,444	204	17,996	247	44,640

- 이처럼 신기술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적용 시 현장실적이 적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과 사용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로 감사 시 문책 등이 우려되어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건설업체들의 반발 및 민원부담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정에서 찾을 수 있음.

■ 위원회의 기능에 ‘신기술 선정’을 추가하는 안에 대한 의견

- 본 안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위원회 기능에 “신기술 선정” 기능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안이 시행될 경우 발주부서는 설계 과정에서 당해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 신기술 3개 이상 선정하고 나머지 최종 신기술 선정은 위원회가 맡게 됨.
- 신기술 최종 선정을 위원회가 맡는 본 안의 방법을 따를 경우, 발주담당자는 신기술 선정에 따른 부담감과 책임소재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은 현장을 잘 아는 발주부서가 최종 선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본 개정안이 발주부서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한편, 기술심사담당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약간 달리 하여 2013. 5. 27일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행정2부 시장 방침)” 수립을 통해 발주부서가 신기술 공법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운영토록 지침을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이처럼 발주부서별로 선정위원회를 각자 운용하는 방법은 행정 및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담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종합의견

- 본 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신기술 선정방법에 대해 현행과 같이 “발주부서가 최종 선정하는 방법”에 본 안의 “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발주부서에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방법의 선택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신기술 선정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기술 활용 촉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부서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자체 운영하는 현행을 대체함으로써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아래 [표 3]과 같이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제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들이 신

기술 보유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 선정 및 보안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표 3]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연도별 운영실적

연 도	심의개최 건수	심의요청 건수	심의결과건수				연간심의비용 (천원)	심의관련 민원건수
			적정	조건부	부적정 (재심의)	기타 (심의대상)		
2008	4	4	3	1	-	-	2,050	-
2009	5	5	-	5	-	-	2,670	-
2010	20	25	1	19	4	1	11,050	-
2011	19	27	-	23	1	3	8,910	-
2012	14	23	-	22	1	-	10,300	-

주) 2013년 6월 현재 신기술 심의건수는 33건(18회 개최)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신기술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김기덕 위원)

답변) 업체 선정 후 일부 경쟁사의 민원, 하자발생 시 감사 등으로 인해 꺼리는 것이 현실임.(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질의) 동 개정안이 신기술 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임을 인정하는지? (김기덕 위원)

답변) 인정함.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p>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p> <p>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p> <p>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p> <p>5.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p> <p>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p>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p>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p> <p>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p> <p>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p> <p>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p> <p>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 ----- ----- ----- -----</p> <p>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p>

<p>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생략)</p> <p>1. (생략)</p> <p>2.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신설》》</p>	<p>계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p> <p>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